## 약관변경대비표

1. 약관명 :『하나 기업어음 특약』

2. 변경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주요 변경내용 : (구)하나은행 약관을 구행명 삭제후 통합약관으로 개정

(구)외환은행 관련 약관 해당사항없음

개정 전(구. 하나은행)	개정 후	비고
제1조 통장에 의한 거래 ~ 제6조 어음의 부도	제1조 통장에 의한 거래 ~ 제6조 어음의 부도	(구.하나은행
(생략)	(좌동)	특약 준용)
제7조 (사고 등의 신고)	제7조 (사고 등의 신고)	
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문구 정비)
분실ㆍ도난ㆍ멸실 등으로 잃으신 때에는 유선	분실ㆍ도난ㆍ멸실 등으로 잃으신 때에는 유선	
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저희은행에 <u>신고하여</u>	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저희은행에 신고 <u>하여야</u>	
<u>주십시오</u> .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u>합니다</u> .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u>은행이</u>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대하여는 <u>은행은</u>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